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4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정춘생·김재원·조 국

이해민 · 신장식 · 서왕진

김준형 • 박은정 • 차규근

김선민 · 고민정 · 권향엽

복기왕 · 정진욱 · 박범계

박지원 · 위성곤 · 황 희

윤종오 • 이성윤 • 남인순

김준혁 · 소병훈 의원

(23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폭행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범죄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음. 또한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경우도 많지만, 현행법 체계에서 교제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특히 교제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에도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수단이 없는 상황임. 지난 3월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은 재

범률이 높고, 중대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사법 기관의 신속한 개입과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이에 가정폭력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포함하여 교제 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피 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2023년도 한 해 동안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138명, 살인미수 행위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311명에 달함. 최소 19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살해될 위협을 받는다고 함. 그런데 현행법은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의존하는 반의사불벌을 적용하고 있어 경찰신고 건수 중 사건 접수조차되지 않고 현장 종결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음.

이에 반의사불벌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처벌 없이 교육 및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여 보복폭행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내용을 삭제해 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5조 등).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범죄는 가해자의 통제·지배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제 행위' 자체를 금지 하는 입법이 필요함. 상대의 일상생활을 감시·비난하고, 명령과 지시 에 따르게 하며,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개인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도 수사·사법 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 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중대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법률 제 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에서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을 정하고, 피해 가족구성원과 친밀한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이란 가정구성원 및 친밀한 관계 인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 위를 말한다.
- 2. "가정구성원 및 친밀한 관계인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라. 동거하는 친족
- 마.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애정에 기반하여 친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주거를 같이 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특별히 친밀한 것으로 인식되는 등의 관계의 실체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하였 던 사람
- 3.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

- 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 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 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호의 죄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이루어진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고립시키거나 일상생활을 통제하려는 행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일상생활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 4.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과 공범을 말한다.
- 5. "피해자"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6.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에게 하는 제46 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 8.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인하여 제62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 다.
- 9.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 제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 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법원이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동의 진단ㆍ상담
- 2. 가정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3. 그 밖에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5조(반의사불벌의 배제)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제312조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의 죄
 - 2.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3.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 항제3호의 죄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1절 통칙

-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 인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 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폭력행위의 제지, 폭력 행위자 · 피해자의 분리
 -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10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5. 제62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 제8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및 친 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9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 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34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1조(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1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0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11조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 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13조(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14조(관할) ①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②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 제15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13조에 따라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 방법원(이하"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 제16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17조(송치 시의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 처리) ① 제 15조제1항 또는 제16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 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제14조에 따른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제34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③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 제18조(송치서) 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건을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송) ①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보호처분의 효력) 제46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52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 1. 해당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에 대한 제43조제1항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제1호의 사유에 따른 결정만 해당한다)이 확정된 때

- 2. 해당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이 제3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라 송치된 때
- ②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 제22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수사 또는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 법에 따른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 다)의 사실을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 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2절 조사 · 심리

- 제24조(조사·심리의 방향) 법원은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 피해자, 그 밖의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조사관) ①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 호사건조사관을 둔다.
 - ②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조사관의 자격, 임면(任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6조(조사명령 등) ① 판사는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의 주 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 력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審問)이나 그들의 정

- 신·심리상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판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하는 조사요구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27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제1항 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28조(진술거부권의 고지) 판사 또는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 조사관은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가정 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29조(소환 및 동행영장) ①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행영장을 발

부할 수 있다.

- 제30조(긴급동행영장) 판사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가 소환에 따르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환 없이 동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제31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引致)하거나 수용 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 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 연월일을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2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① 동행영장은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 사건조사관이나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 사보(이하"법원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 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3조(보조인) ①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는 자신의 가

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 ② 변호사,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게하거나 제공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법원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선임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4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 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 또는 제17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 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폭력 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55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

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 데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데만 각 기 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 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 를 받아야 한다.
-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 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①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 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①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35조(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제34조제9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에게 임시조 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 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 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6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7조(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일을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8조(심리의 비공개) ① 판사는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

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證人訊問)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허가 여부와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결정을 할 수 있다.
- 제39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① 법원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신청인이 이미 심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 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법원은 심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조사관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

- 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0조(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 ① 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 (鑑定)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과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41조(검증, 압수 및 수색) ① 법원은 검증,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2조(협조와 원조) ① 법원은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단체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 그 밖의 단체가 그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야 한다.
- 제43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판사는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 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 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제15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 2. 제16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4조(처분의 기간 등)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5조(위임규정)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보호처분

- 제4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1.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2.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⑥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47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수 없다.
- 제48조(몰수)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가 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

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 제49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① 법원은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50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법원은 제4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있다.
- 제51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 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

- 사 · 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52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가 제4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제15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 2. 제16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 제53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 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있다.
- 제54조(비용의 부담) ①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 결정 또는

제4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항고와 재항고

- 제55조(항고) ① 제10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6조의 보호처분, 제51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52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 및 친밀한관계 폭력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제43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56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 제57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 하여야 한다.
 -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임시조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있다.
- 제58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 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59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

이 없다.

제60조(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 제61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 제62조(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 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친권자인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5.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 권행사의 제한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3조(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62조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 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 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 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4조(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62조제 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 제65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조 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 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 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 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66조(병합심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1.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각각 동일 인인 경우
 - 2. 그 밖에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제67조(준용)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68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62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63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64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69조(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제70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이 계속 (繁屬)된 제1심 법원에 제71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71조(배상명령) ① 법원은 제1심의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 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한 다)을 명할 수 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 2.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 ② 법원은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에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 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제72조(배상명령의 선고) ①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 과 금액을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 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 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 ⑤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 제73조(신청의 각하) ①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 ②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보호 처분 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 ③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 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 제74조(불복) ①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과 함께 항고심에 이심(移審)된다. 보 호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③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

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재항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는 배상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제75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76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5장 벌칙

- 제77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 1.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

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

- 2. 제62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64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폭력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8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는 제외한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그 기관장(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2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 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법원이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제13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으로서 제4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제8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

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12 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
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